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278-14

<http://www.mifaff.go.kr>

# 양 곡 관 리 법

2012. 3.



## 총 목 차

▶ 양곡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1
▶ 양곡관리법 시행령 별표 .....	77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81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91







**양곡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양곡관리법 목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제2조(곡류 등) 제2조의2(양곡연도)		2 3
제2장 양곡의 관리			4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4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5
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제4조 삭제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5 6 6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5조의2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7 7 7 7 7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9조의2 삭제		7
제6조 삭제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7
제7조 삭제			8
제8조 삭제			8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8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8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9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10
	제13조 삭제		10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	10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11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기준)	12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13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제1조의5 삭제	13
제11조(양곡의 수출입)			13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제14조(수입의 허가)		14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14
		제2조의2(수출 추천대상 양곡)	14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16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16

법	시행령	시행규칙	페이지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제14조의2(결손처분)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17	
	제15조 삭제		18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제3조 삭제	19
		제17조 삭제		19
		제18조 삭제		19
		제19조 삭제		20
		제20조 삭제		20
	제17조 삭제			20
	제18조 삭제			20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20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22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24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25
			제6조 삭제	25
			제7조(제조업의 범위)	25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26
		제22조 삭제		27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27
		제24조 삭제		28
		제25조 삭제		28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26조 삭제		28
	제27조 삭제		28
	제28조 삭제		28
	제29조 삭제		28
	제30조 삭제		28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28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29
제21조(영업정지 등)		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29
			30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33
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33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34
			36
제23조 삭제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37
제24조(업무대행)			38
			38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38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38
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39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40
제25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40

법	시행령	시행규칙	페이지
제25조의4(예산 반영)			41
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41
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41
<b>제3장 보칙</b>			42
제26조(용자 및 보조)	제31조(용자 및 보조 대상사업)		42
제27조(감독)	제32조(감독)		43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45
제27조의2(명예감시원)			45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46
	제33조 삭제		46
제28조(청문)			46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47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48
		제11조 삭제	50
		제12조(보고)	50
<b>제4장 벌칙</b>			51
제30조 삭제			51
제31조(벌칙)			5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32조(벌칙) 제33조 삭제 제34조(벌칙) 제35조(양벌규정) 제36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2 52 52 54 54
부칙	부칙	부칙	55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양곡관리법 「1994. 1. 5」 「法律 第04707號 全文改正」</p> <p>改正 1994.12.31 法律 第4842號 改正 1996. 8. 8 法律 第5153號 改正 1997. 1.13 法律 第5280號 改正 1997.12.13 法律 第5453號 改正 1999. 1.21 法律 第5665號 改正 2000.12.29 法律 第6305號 改正 2002. 1.14 法律 第6594號 改正 2002.12.30 法律 第6836號 改正 2004.12.31 法律 第7275號 改正 2005. 3.31 法律 第7432號 改正 2005. 3.31 法律 第7433號 改正 2006.12.28 法律 第8105號 改正 2007. 8. 3 法律 第8595號 改正 2008. 2.29 法律 第8852號 改正 2009. 4. 1 法律 第9622號</p> <p><b>제1장 총칙 &lt;개정 2009.4.1&gt;</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p>	<p>양곡관리법시행령 「1994. 4. 30」 「大統領令 第14224號」 全文改正</p> <p>改正 1994.12.23 大統領令 第14438號 改正 1994.12.23 大統領令 第14446號 改正 1994.12.31 大統領令 第14489號 改正 1995.12.30 大統領令 第14886號 改正 1996. 8. 8 大統領令 第15135號 改正 1997. 2. 1 大統領令 第15266號 改正 1997.12.31 大統領令 第15598號 改正 1999. 7.29 大統領令 第16491號 改正 1999.12.28 大統領令 第16646號 改正 2001. 7.30 大統領令 第17325號 改正 2002. 7.13 大統領令 第17673號 改正 2005. 6.30 大統領令 第18925號 改正 2007.12.31 大統領令 第20506號 改正 2008. 1.31 大統領令 第20576號 改正 2008. 2.29 大統領令 第20677號 改正 2009. 9.29 大統領令 第21758號 改正 2010. 3.15 大統領令 第22075號 改正 2012. 1.25 大統領令 第23535號</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p>	<p>양곡관리법시행규칙 「1994. 5. 25」 「農林水産部令 第1141號」 全文改正</p> <p>改正 1994.12.31 農林水産部令 第1165號 改正 1995.12.30 農林水産部令 第1220號 改正 1996.12.28 農林部令 第1246號 改正 1997. 2. 6 農林部令 第1251號 改正 1999. 5.24 農林部令 第1331號 改正 1999. 8.21 農林部令 第1341號 改正 2000. 6.23 農林部令 第1366號 改正 2002. 7.27 農林部令 第1423號 改正 2005. 7. 1 農林部令 第1498號 改正 2006. 3.10 農林部令 第1518號 改正 2008. 2. 1 農林部令 第1579號 改正 2008. 3. 3 農林部令 第 1 號 改正 2009.10.1 農林水産食品部令 第 83 號 改正 2011.4.13 農林水産食品部令 第191 號</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4.1]</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곡"이란 미곡(米穀)·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가루·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li> <li>3. "공공비축미곡"이란 미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li> </ol>	<p>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5.6.30, 2008.1.31&gt;</p> <p><b>제2조(곡류 등)</b>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류(豆類)·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울무·울무쌀·기장·기장쌀</li> <li>2. 미곡(米穀)·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li> <li>3. 감자·고구마</li> </ol> <p>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곡·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li> </ol>	<p>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10.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을 말한다.</p> <p>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p> <p>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p> <p>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p> <p>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p> <p>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p>	<p>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p> <p>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몰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p> <p>4. 전분류(澱粉類)를 변성(變性)시킨 것 [전문개정 2009.9.29]</p> <p><b>제2조의2(양곡연도)</b>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9.29]</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p> <p>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p> <p>[전문개정 2009.4.1]</p> <p><b>제2장 양곡의 관리 &lt;개정 2009.4.1&gt;</b></p> <p><b>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b></p> <p>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p> <p>②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li> <li>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li> <li>3. 공공비축미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li> </ol>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4.1]</p> <p><b>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b></p> <p>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p>	<p><b>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b></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9.29]</p> <p><b>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b> ①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li> <li>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li> <li>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li> </ol>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p>	<p>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p> <p>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li> <li>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li> <li>3.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p>[전문개정 2009.9.29]</p> <p><b>제4조 삭제 &lt;2005.6.30&gt;</b></p> <p><b>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b> ①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p> <p>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4.1]</p> <p><b>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p>	<p>②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7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9.29]</p> <p><b>제5조의2</b> 삭제 &lt;2005.6.30&gt;</p> <p><b>제6조</b> 삭제 &lt;2005.6.30&gt;</p> <p><b>제7조</b> 삭제 &lt;2005.6.30&gt;</p> <p><b>제8조</b> 삭제 &lt;2005.6.30&gt;</p> <p><b>제9조</b> 삭제 &lt;2005.6.30&gt;</p> <p><b>제9조의2</b> 삭제 &lt;2005.6.30&gt;</p>	<p><b>제1조의2 (부대비용의 범위)</b>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p> <p><b>제6조</b> 삭제 &lt;2005.3.31&gt; <b>제7조</b> 삭제 &lt;2005.3.31&gt; <b>제8조</b> 삭제 &lt;2005.3.31&gt;</p> <p><b>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b> ①농림수산물부장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용</li> <li>2. 가공용</li> <li>3. 공공용</li> <li>4. 일반판매용</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li> </ol>	<p><b>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b>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관료</li> <li>2. 이자</li> <li>3. 입출고료</li> <li>4. 상하차료</li> <li>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수산물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li> </ol> <p>[전문개정 2009.10.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 수출용  6. 시험연구용  7. 가공식품 개발용  [전문개정 2009.9.29]</p> <p><b>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b>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4. 수입 대체용  5. 일반판매용</p> <p>②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p>	<p>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p> <p><b>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b>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p> <p><b>제13조 삭제</b> &lt;1999.7.29&gt;</p>	<p><b>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 자격기준)</b>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p> <p><b>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매입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li> <li>2.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li> <li>3. 해당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li> </ol>		<p>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p> <p>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전문개정 2009.4.1]&lt;2012.7.22 시행&gt;</p>		<p><b>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b> 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b>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③공공비축미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p> <p>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4.1]</p> <p><b>제11조(양곡의 수출입)</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p>	<p><b>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b>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통계청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9.29]</p>	<p>말한다.</p> <p>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p> <p>②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b>제1조의5</b> 삭제&lt;2009.10.1&gt;</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거나 수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p> <p><b>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b>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p>	<p><b>제14조(수입의 허가) ①</b>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li> <li>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li> <li>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li> </ol> <p>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p>	<p><b>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b>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p> <p><b>제2조의2(수출 추천대상 양곡)</b>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③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한다.</p> <p>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하려면 미리 농림수산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09.4.1]</p>		<p>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9.10.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b>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li> <li>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li> <li>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li> </ol> <p>[전문개정 2009.4.1]</p> <p><b>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p>		<p><b>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b>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비자 시판용 미곡</li> <li>2.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li> <li>3. 두류(豆類) 중 대두·팥·녹두·땅콩</li> <li>4. 메밀·감자</li> <li>5.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울무, 밀의 분쇄물, 가루, 압착물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li> <li>6.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울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li> </ol> <p>[전문개정 2009.10.1]</p> <p><b>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b>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li> <li>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li> <li>3.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전문개정 2009.4.1]</p>	<p><b>제14조의2(결손처분)</b>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p> <p>②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li> </ol>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4조 삭제 &lt;1999.1.21&gt;  제15조 삭제 &lt;1999.1.21&gt;  <b>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매입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p>	<p>1. 채납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채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전문개정 2009.9.29]  <b>제15조</b> 삭제 &lt;1999.7.29&gt;  <b>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b>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25&gt;  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p>	<p>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문개정 2009.10.1]  <b>제3조</b> 삭제 &lt;1999.8.21&gt;</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 매입량 외의 일정량에 대하여 정부매입가격과 산지(産地)가격의 차액을 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른 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4.1]</p> <p><b>제17조</b> 삭제 &lt;1999.1.21&gt;  <b>제18조</b> 삭제 &lt;1999.1.21&gt;  <b>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b>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p>	<p>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p> <p>[전문개정 2009.9.29]</p> <p><b>제17조</b> 삭제 &lt;1999.7.29&gt;  <b>제18조</b> 삭제 &lt;1999.7.29&gt;  <b>제19조</b> 삭제 &lt;1999.7.29&gt;  <b>제20조</b> 삭제 &lt;1999.7.29&gt;</p> <p><b>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b> ①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p>	<p><b>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b> ①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같다. &lt;개정 2010.3.15&gt;</p> <p>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p>	<p>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p> <p>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p> <p>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p> <p>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전문개정 2009.4.1]</p> <p><b>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b>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li> <li>2.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li> <li>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li> </ol>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li> <li>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li> </ol>		<p>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③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p>		<p>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li> <li>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④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p>		<p>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⑥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p> <p><b>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b>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한다)</p>	<p>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b>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b>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  <b>제6조 삭제</b> &lt;1999.8.21&gt;  <b>제7조(제조업의 범위)</b> 영 제21조제1항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精米)·정맥(精麥)·밀쌀·압맥(壓麥) 또는 할맥(割麥)을 하는 업을 말한다]</p> <p>②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li> <li>2. 업체명</li> <li>3. 업체의 소재지</li> <li>4. 업체의 가공능력</li> </ol>	<p>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p> <p>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p> <p>[전문개정 2009.10.1]</p> <p><b>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b>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9.10.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공방법 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p>	<p>③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제조업</li> <li>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조미식품제조업(된장, 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li> </ol> <p>[전문개정 2009.9.29]</p> <p>제22조 삭제 &lt;1999.7.29&gt;</p> <p>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인정하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공시설의 개선</li> <li>2. 가공수율(加工收率)·가공방법 및 가공생산물 규격의 제한</li> <li>3. 포장규격·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제한</li> <li>4. 가공생산물에 대한 가공 표지 첨부</li> </ol> <p>[전문개정 2009.4.1]</p> <p><b>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b></p> <p>①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p>	<p>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9.29]</p> <p><b>제24조</b> 삭제 &lt;2009.9.29&gt;</p> <p><b>제25조</b> 삭제 &lt;2009.9.29&gt;</p> <p><b>제26조</b> 삭제 &lt;2009.9.29&gt;</p> <p><b>제27조</b> 삭제 &lt;2009.9.29&gt;</p> <p><b>제28조</b> 삭제 &lt;2009.9.29&gt;</p> <p><b>제29조</b> 삭제 &lt;2009.9.29&gt;</p> <p><b>제30조</b> 삭제 &lt;2009.9.29&gt;</p>	<p><b>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b>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p> <p>[전문개정 2008.2.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p> <p><b>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b> ①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li> <li>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li> </ol> <p>②제1항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p>		<p><b>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b>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1조(영업정지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li> <li>2.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Most"·"Special", "특"·"최고",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li> <li>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li> <li>4. 수상·인증·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li> </ol> <p>[전문개정 2009.10.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 등을 수입한 경우</li> <li>2.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li>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li> <li>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자</li> <li>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li>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li> </ol>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7.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p> <p>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p> <p>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p>1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p> <p>1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p> <p>13.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p> <p>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4.1]&lt;2012.7.22 시행&gt;</p> <p><b>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b></p> <p>①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p>		<p><b>제8조(행정처분의 기준)</b>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전문개정 2008.2.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li> <li>2.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li> </ol> <p>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09.4.1]</p> <p><b>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b>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9조제1항(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li> <li>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li> <li>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li> </ol> <p>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p> <p>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9.4.1]</p> <p><b>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4.1]</p>		<p><b>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비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10.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b>제23조</b> 삭제 &lt;2009.4.1&gt;</p> <p><b>제24조(업무대행)</b>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4.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b> &lt;신설 2009.4.1&gt;</p> <p><b>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b>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li> <li>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li> <li>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li> <li>4. 출연금</li> <li>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li> </ol> <p>[본조신설 2009.4.1]</p> <p><b>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b> 부채의 상환방법·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9.4.1]</p>	<p><b>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b>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환 예정일</li> </ol>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b>제25조의3(기금의 운용·관리)</b> ①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p> <p>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채의 상환</li> <li>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ol> <p>[본조신설 2009.4.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상환할 부채의 내용</li> <li>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li> <li>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li> </ol> <p>[본조신설 2009.9.29]</p> <p><b>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9.9.29]</p> <p><b>제30조의4(기금의 용도)</b> 법 제25조의3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b>제25조의4(예산 반영)</b>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li> <li>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li> </ol> <p>[본조신설 2009.4.1]</p> <p><b>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9.4.1]</p> <p><b>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p>	<p>[본조신설 2009.9.29]</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면한다.</p> <p>[본조신설 2009.4.1]</p> <p><b>제3장 보칙 &lt;개정 2009.4.1&gt;</b></p> <p><b>제26조(융자 및 보조)</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p>	<p><b>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b> ①법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판</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p> <p><b>제27조(감독)</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li> <li>3. 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li> <li>4. 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li> <li>5. 양곡관리 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li> <li>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li> </ol> <p>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p> <p><b>제32조(감독)</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곡의 소유자</li> <li>2. 양곡매매업자</li> <li>3. 양곡가공업자</li> <li>4.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li> </ol> <p>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곡의 소유자: 양곡 소유량</li> <li>2. 양곡매매업자: 양곡의 매매가격 및 양곡의 종류별 재고량</li> <li>3. 양곡가공업자: 원료 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포장·판매·재고량</li> <li>4. 양곡의 수출입업자: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li> <li>5. 양곡의 보관업자: 보관 양곡의 품질 상태,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및 사고(事故)량</li> <li>6. 양곡의 수송업자: 수송 양곡의 출발지·도착지별 수송량, 화주명(貨主名), 보관량, 사고량, 수송 수단 및 수송 능력</li> </ol>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p> <p><b>제27조의2(명예감시원)</b> ①농림수산식 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 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 원을 둘 수 있다.</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 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9.29]</p>	<p><b>제10조 (조사공무원의 증표)</b> 법 제27 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 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전문개정 2009.4.1]</p> <p><b>제27조의3(포상금 지급)</b>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li> <li>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li> <li>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li> </ol> <p>[전문개정 2009.4.1]</p> <p><b>제28조(청문)</b>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b>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b>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09.9.29]</p> <p><b>제33조 삭제 &lt;1997.12.31&gt;</b></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전문개정 2009.4.1]</p> <p><b>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b> ①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농림수산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1.7.25&gt;</p> <p>[전문개정 2009.4.1]</p>	<p><b>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b> ①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중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 양곡의 판매</li> <li>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은 제외한다)</li> <li>3.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li> </ol> <p>②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li> <li>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li> <li>3.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li> <li>4.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li> </ol> <p>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p>	<p><b>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b>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④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2.1.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에 따른 양곡 중 미곡의 수입</li> <li>2. 제1호에 따라 수입한 미곡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판매용으로의 판매</li> </ol> <p>[전문개정 2009.9.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li> <li>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li> </ol> <p>②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대한 감시·신고</li> <li>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li> <li>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신고</li> <li>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양곡의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li> </ol>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형 양곡의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p> <p>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p> <p>③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09.10.1]&lt;2012.7.22 시행&gt;</p> <p><b>제11조</b> 삭제 &lt;2008.12.31&gt;</p> <p><b>제12조(보고)</b>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벌칙 &lt;개정 2009.4.1&gt;</b></p> <p><b>제30조</b> 삭제 &lt;1999.1.21&gt;</p> <p><b>제31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li> <li>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li> </ol> <p>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p>		<p>달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p> <p>[전문개정 2009.4.1]</p> <p><b>제32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li> <li>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한 자</li> </ol> <p>[전문개정 2009.4.1]</p> <p><b>제33조 삭제</b> &lt;2009.4.1&gt;</p> <p><b>제34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li> <li>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li> <li>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li> <li>4.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li> <li>5.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li> <li>6.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li> <li>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계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li> <li>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li> </ol>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피한 자 [전문개정 2009.4.1]</p> <p><b>제35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p> <p><b>제36조(과태료)</b>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한 자</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p> <p>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p> <p>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p> <p>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p>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4.1]</p>	<p><b>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9.29]</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lt;제4707호, 1994.1.5&gt;</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폐지법률)</b> ①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b>제3조(양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b>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p>	<p>부 칙 &lt;제14224호, 1994.4.30&gt;</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b>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p> <p><b>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정업자"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p>	<p>부 칙 &lt;제1141호, 1994.5.25&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1165호, 1994.12.31&gt;</p> <p>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1220호, 1995.12.30&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b>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p> <p>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 3 및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p> <p>③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p> <p>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p>	<p>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p> <p>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p> <p><b>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b>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p>	<p><b>부 칙</b> &lt;제1246호, 1996.12.28&gt;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251호, 1997.2.6&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331호, 1999.5.24&gt;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생략&gt;</p> <p><b>제2조 생략</b></p> <p><b>제3조(다른법령의 개정)</b> ①생략</p> <p>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장"을 "국립농산물품</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b>부 칙</b> &lt;제4842호, 1994.12.31&gt;</p> <p>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5153호, 1996.8.8&gt; (정부조직법)</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 생략</p> <p><b>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내지 &lt;27&gt; 생략 &lt;28&gt;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b>부 칙</b> &lt;제14438호, 1994.12.23&gt;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내지 제4조</b> 생략</p> <p><b>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내지 &lt;166&gt;생략 &lt;167&gt;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lt;168&gt;내지 &lt;327&gt;생략</p> <p><b>부 칙</b> &lt;제14446호, 1994.12.23&gt;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질관리원지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p> <p>별표 2중 소규모도정업 비고란 제3호 및 대규모도정업 비고란 제6호중의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p> <p><b>부 칙</b> &lt;제1341호, 1999.8.21&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366호, 2000.6.23&gt;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 생략</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p> <p>제2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p> <p>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p> <p>&lt;29&gt;내지 &lt;69&gt;생략</p> <p><b>제4조 생략</b></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 생략</b></p> <p><b>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내지 &lt;60&gt; 생략</p> <p>&lt;61&gt;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lt;62&gt;내지 &lt;140&gt;생략</p> <p><b>부 칙</b> &lt;제14489호, 1994.12.31&gt;</p> <p>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4886호, 1995.12.30&gt;</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생략</p> <p>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4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p> <p>③생략</p> <p><b>부 칙</b> &lt;제1423호, 2002.7.27&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498호, 2005.7.1&gt;</p> <p>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518호, 2006.3.10&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lt;제5280호, 1997.1.13&gt; 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5453호, 1997.12.13&gt;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 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 생략</b></p> <p>부 칙 &lt;제5665호, 1999.1.21&gt;</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양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p>	<p>부 칙 &lt;제15135호, 1996.8.8&gt;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내지 제6조 생략</b></p> <p><b>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내지 &lt;76&gt; 생략 &lt;77&gt;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p> <p>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 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 1항·제3항, 제10조제6호, 제11조제1 항제6호·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 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제4호,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1조제1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 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p>	<p>부 칙 &lt;제1579호, 2008.2.1&gt;</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양곡가공업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당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곡가공 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 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b>제3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b>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b>부 칙</b> &lt;제6305호, 2000.12.29&gt; (관세법)</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내지 제6조 생략</b></p> <p><b>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내지 ⑩생략</p> <p>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p> <p>⑫내지 &lt;19&gt;생략</p> <p><b>제8조 생략</b></p>	<p>제24조중 "농림수산부"을 "농림부"로 한다.</p> <p>제21조 본문·제1호, 제22조 및 제35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p> <p>&lt;78&gt;내지 &lt;116&gt;생략</p> <p><b>제8조 생략</b></p> <p><b>부 칙</b> &lt;제15266호, 1997.2.1&gt;</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5598호, 1997.12.31&gt;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 등의개정령)</p> <p>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호, 2008.3.3&gt;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b></p> <p><b>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lt;34&gt;까지 생략</p> <p>&lt;35&gt;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1조의2제5호, 제1조의5, 제2조의3 제4호, 제2조의4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의2제2항</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b>부 칙</b> &lt;제6594호, 2002.1.14&gt;</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b>부 칙</b> &lt;제6836호, 2002.12.30&gt; (국고금관리법)</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내지 제5조 생략</b></p> <p><b>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내지 ⑩생략</p>	<p><b>부 칙</b> &lt;제16491호, 1999.7.29&gt;</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li> <li>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li> </ol> <p>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li> </ol> <p><b>부 칙</b> &lt;제16646호, 1999.12.28&gt;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및 제3조 생략</b></p>	<p>제1호·제3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1, 별표 2 제2호나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p> <p>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lt;36&gt; 부터 &lt;63&gt; 까지 생략</p> <p><b>부 칙</b> &lt;제37호, 2008.11.18&gt;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①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p> <p>②내지 &lt;31&gt;생략</p> <p><b>제7조 생략</b></p> <p><b>부 칙</b> &lt;제7275호, 2004.12.31&gt;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및 제3조 생략</b></p> <p><b>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생략</p> <p>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p>	<p><b>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내지 ⑥생략</p> <p>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li> <li>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li> <li>3.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li> </ol> <p>⑧및 ⑨생략</p> <p><b>제5조 생략</b></p> <p><b>부 칙</b> &lt;제17325호, 2001.7.30&gt;</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17673호, 2002.7.13&gt;</p> <p>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47호, 2008.12.31&gt;</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에 관한 적용례)</b> 제2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b>제3조(수입이익금의 산정등에 관한 적용례)</b> 제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b>부 칙</b> &lt;제55호, 2008.12.31&gt;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⑨</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p> <p>③생략</p> <p><b>제5조 생략</b></p> <p><b>부 칙 &lt;제7432호, 2005.3.3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b>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b>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p> <p><b>제4조(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p>	<p><b>부 칙 &lt;제18925호, 2005.6.30&gt;</b></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p> <p><b>부 칙 &lt;제20506호, 2007.12.31&gt;</b>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 &lt;제20576호, 2008.1.3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b> 이 영</p>	<p>까지 생략</p> <p>⑩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4 제1호가목4)가) 및 나목1)·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⑪ 부터 &lt;16&gt;까지 생략</p> <p><b>부 칙 &lt;제83호, 2009.10.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b>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p> <p><b>부 칙 &lt;제191호, 2011.4.13&gt;</b></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아목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p> <p><b>제5조(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p> <p><b>제6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p> <p>부 칙 &lt;제7433호, 2005.3.31&gt;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 내지 제6조 생략</b></p>	<p>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 칙 &lt;제20677호, 2008.2.29&gt;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b></p> <p><b>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lt;36&gt;까지 생략</p> <p>&lt;37&gt;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4</p>	<p>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위 및 품위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2년 4월 30일까지</li> <li>2. 단백질 함량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3년 4월 30일까지</li> </ol>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b>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p> <p>②생략</p> <p><b>제8조 생략</b></p> <p><b>부 칙</b> &lt;제8105호, 2006.12.28&gt;</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 &lt;제8595호, 2007.8.3&gt;</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13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제2항·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lt;38&gt; 부터 &lt;59&gt; 까지 생략</p> <p><b>부 칙</b> &lt;제21758호, 2009.9.29&gt;</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lt;제8852호, 2008.2.29&gt; (정부조직법)</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lt;생략&gt;…,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b></p> <p><b>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lt;315&gt; 까지 생략</p> <p>&lt;316&gt;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p> <p>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p>	<p><b>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b>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p> <p><b>제3조(경과조치)</b>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p> <p>부 칙 &lt;제22075호, 2010.3.15&gt;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lt;105&gt; 까지 생략</p> <p>&lt;106&gt;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p>	<p>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lt;107&gt; 부터 &lt;187&gt; 까지 생략</p> <p><b>부 칙</b> &lt;제23535호, 2012.1.25&g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⑮까지 생략</p> <p>&lt;16&gt;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p> <p>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물부령"으로 한다.</p> <p>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물부령"으로 한다.</p> <p>&lt;317&gt; 부터 &lt;760&gt; 까지 생략</p> <p><b>제7조 생략</b></p> <p><b>부 칙</b> &lt;제9280호, 2008.12.31&gt; (정부기업예산법)</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b></p> <p><b>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 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p>	<p>유통공사"로 한다.</p> <p>&lt;17&gt;부터 &lt;28&gt;까지 생략</p> <p><b>제3조 생략</b></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⑦ 부터 ⑨ 까지 생략</p> <p><b>제6조 생략</b></p> <p><b>부 칙 &lt;제9622호, 2009.4.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조·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b>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폐지한다.</p> <p><b>제3조(양곡가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b>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b>제4조(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b>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휴업 또는 폐업부터 적용한다.</p> <p><b>제5조(양곡가공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b>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b>제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b>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p> <p><b>제7조(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b>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b>제8조(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 조치)</b>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운용·관리한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운용·관리한 것으로 본다.</p> <p>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회계기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p> <p><b>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b>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lt;제10885호, 2011.7.21&gt; (농수산물품질관리법)</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b></p> <p><b>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한다.</p> <p>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p> <p>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⑧부터 ⑬까지 생략  <b>제20조</b> 생략</p>		





# 시행령 별표



[별표] <개정 2009.9.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2배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줄이는 경우 과태료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하고, 늘리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100만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100만원
다.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5호	50만원
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6호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제2호바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1)의 해당 업소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저 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 원 단위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최저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저 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 원 단위로 부과한다.

#### 4. 제2호바목의 과태료 부과방법

가. 양곡매매업소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양곡가공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곡매매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양곡가공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거나 운반 중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가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개정 2009.10.1>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3 관련)

용 도	매입 자격기준	비고
1. 국가기관용	○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등 급식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2. 가공용, 시험연구용, 가공식품 개발용	○ 식품제조·가공업 및 주류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보유 시설의 쌀 가공처리 능력이 월간 10톤 이상인 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로서 제조시설 면적이 16.5㎡ 이상인 자 ○ 가공식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려는 연구기관 및 업체	
3. 공공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단체·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제외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지역교육청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이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일반판매용	○ 도정 등 가공능력, 자본금, 매출액, 판매점포, 쌀 소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5.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사료용, 수입 대체용, 수출용	○ 필요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자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09.10.1>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양곡매매·판매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법령	매입자격 제한기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법 제9조의2 제1호	6개월	1년	-
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2호	1년	-	-
다. 해당 양곡에 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법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3호	3개월	6개월	1년
라.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2.7.22 시행>	법 제9조의2 제4호, 제4호의2	3개월	6개월	1년
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5호	3개월	6개월	1년
바. 양곡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5호	3개월	6개월	1년

[별표 3] <개정 2009.10.1>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제분업 및 제조업

구 분		시설기준
제분업	밀가루	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다. 체장치: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라. 시험장치: 자체 품질관리에 필요한 회분·단백질 및 사분의 분석시설
	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	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다. 체장치: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제조업	옥수수전분 및 옥수수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 제조업,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

2. 도정업

구 분	시설기준
미곡도정	미곡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맥류도정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비고

- 가. 도정업은 미곡도정 또는 맥류도정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나. “미곡도정”이란 벼를 현미 또는 쌀로 도정하거나, 현미를 쌀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맥류도정”이란 보리 또는 밀을 정맥·밀쌀·압맥 또는 할맥으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 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위 시설기준 이상으로 하는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1.4.13>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

1. 표시사항

가. 품목

- 1)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
- 2)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된 모든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되, 혼합된 품목 또는 품명이 다섯 가지를 넘으면 혼합비율 또는 중량이 많이 혼합된 순으로 다섯 가지 이상을 표시
- 3) 여러 가지 양곡 또는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품목별로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과부족 허용오차는 10퍼센트 이하로 함

나. 생산연도(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 1)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 2)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 비율을 표시

다. 중량

실제 중량을 표시

라.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 1)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 표시가 가능한 다른 품종과의 혼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2)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
- 3)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

마. 도정 연월일(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 1)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 2)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바.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사. 등급 표시(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함)

- 1)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하되 등급의 구분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2)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
- 3) 가공업체의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용 쌀은 등급표시 대신에 "가공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 4)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 할 수 있음

아. 단백질함량 표시(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함)

- 1) 해당되는 함량에 "○" 표시하되, 함량의 구분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2) 단백질 함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
- 3) "가공용"이라고 표시한 쌀은 함량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2. 표시방법

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1) 위치

- 가) 포장 앞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양곡 표시사항의 일괄표시 예시에 따라 표시
- 나)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앞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뒷면에 표시할 수 있음
- 다) 품목(또는 품명) 및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

품종		원산지	00군	중량	20kg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미검사
단백질함량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미검사
생산연도	2010	도정연월일		2011.11.1.	
생산자	주소		00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상호명(성명)		00미곡종합처리장		
	전화번호		031)000-0000		

- \* 등급·단백질함량 표시는 해당 등급·함량에 ○ 표시
- \* 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음
- \*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2) 글자크기 : 10킬로그램 이상의 포장양곡은 16포인트(24급) 이상으로 하고, 10킬로그램 미만의 포장양곡은 12포인트(18급) 이상으로 함. 다만, 1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8포인트(12급)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3) 색도 : 포장재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
- 4)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고무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품목·중량·생산자·주소·상호 또는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 1) 표시방법: 용기 표면, 뚜껑 등에 표시
- 2) 용기 표시: 가로 10cm × 세로 5cm 이상
- 3) 뚜껑 표시: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다. 표시 문자

- 1)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 2) 영문 또는 한문 등으로 표시하려면 한글 표시 다음에 ( )로 표시



[별표 5] <개정 2009.10.1>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양곡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1) 고의가 있는 경우 2) 과실인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6개월  경고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고의가 있는 경우 2) 과실인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6개월  경고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위반 행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영업소 폐쇄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법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2012.7.22 시행>	법 제21조 제1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차.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2012.7.22 시행>	법 제21조 제1항제10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카.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012.7.22 시행>	법 제21조 제1항제9의2호 및 제1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타.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2호	영업소 폐쇄		
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6은 별표 2로 이동 <2008.2.1>]

[별표 7은 별표 4로 이동 <2008.2.1>]



# 시행규칙 별지서식





(뒤 쪽)

### 미곡등수입허가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처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구비서류	없 음		
근거법규	<p>○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p> <p>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의 허가)</p>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유의사항	<p>○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곡 등을 수입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한 미곡 등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p>		



### 양곡가공업 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기관(부서)	특별자치도, 시·군·구 (양곡담당부서)
근거법령	<p>○ 「양곡관리법」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유의사항	<p>○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p>		
작성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⑥란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 제조업 등으로 적습니다.</li> <li>2. ⑦란은 신고하려는 업종(제분·제조)을 적습니다.</li> <li>3. ⑨란은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철골조스레트, 시멘트 바닥 등)를 요약하여 적습니다.</li> <li>4. ⑬란은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 제분업 중 밀가루제분업은 제품생산 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 능력을 적습니다.</li> </ol>		



업체명:

###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업체 구분	동력시설						기계시설														
	전동기		발동기		계		업종 구분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형식	마력(대)	형식	마력(대)	마력	대															

※ 작성방법

1. 업체 구분은 제분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업종 구분은 밀가루 및 옥분 및 그 밖의 곡분 제분, 옥수수전분 및 전분당 제조,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97mm×210mm  
(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0.1>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

신고 번호	신고 연월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체 및 업종 구분	가공능력 (M/T)	비 고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제 호	
<b>양곡가공업(□ 제분업용 □ 제조업용) 신고증</b>	
업 체 명 :	사 진 2.5×3cm
대표자성명 :	
소 재 지 :	
업체 구분 :	
신고업종 :	
가공능력(1일 24시간 기준, M/T):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제 호

###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영업의 종류 :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M/T) (1일 8시간 기준)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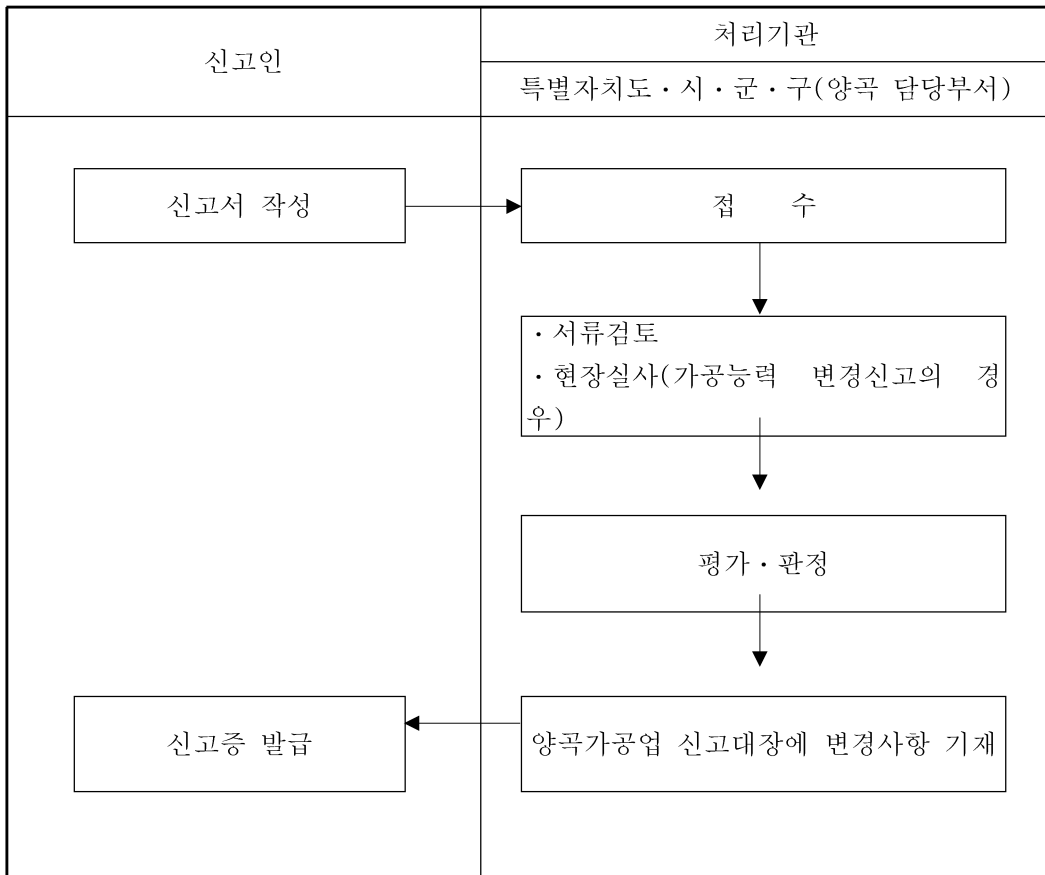


(뒤 쪽)

###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안내

작성방법	⑧란은 제조업·제분업의 경우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 제분업 중 밀가루제분업은 제품생산 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 능력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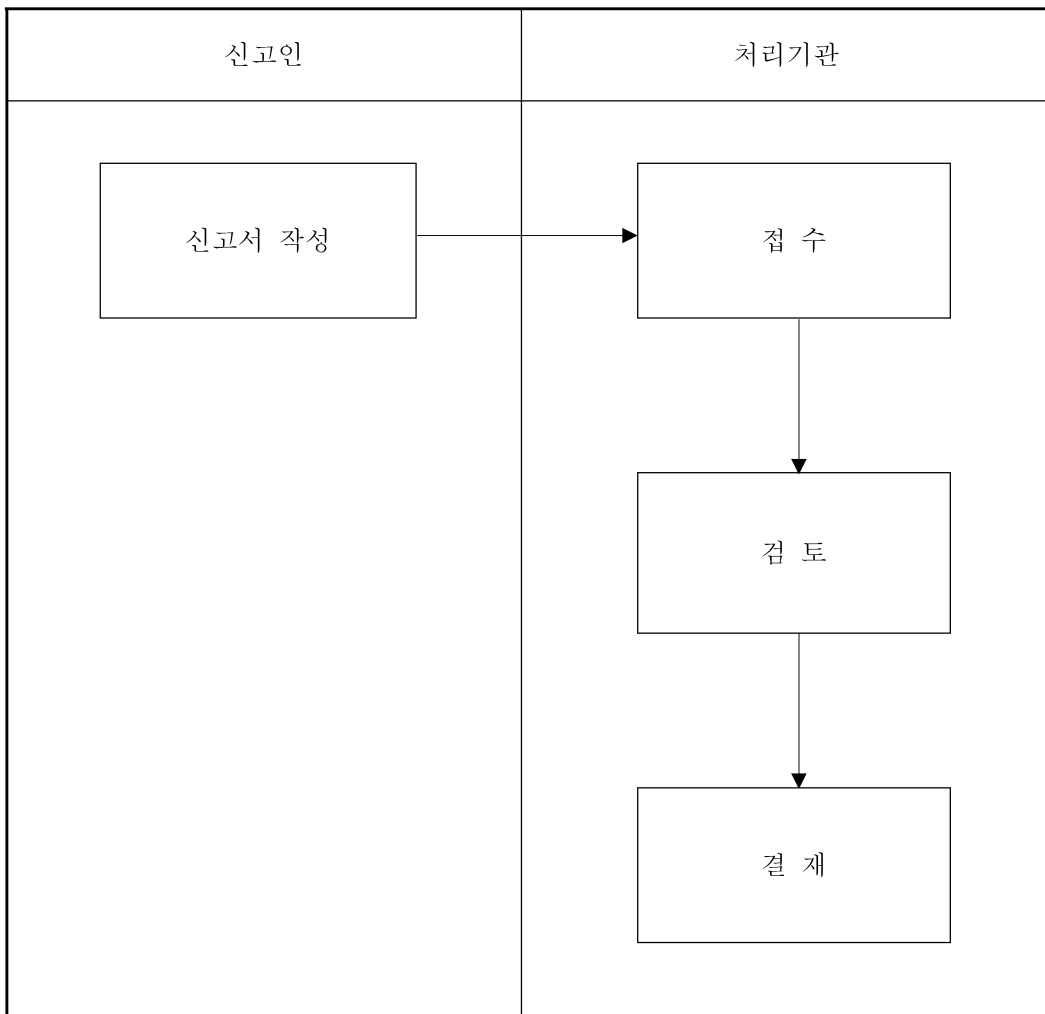


(뒤쪽)

### 양곡가공업 휴업·폐업신고 안내

신고하는 곳	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양곡 담당부서
유의사항	1. 신고 대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제3호).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앞 쪽)

제 호  <b>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b>	사 진 (2.5×3cm)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바탕색: 연노랑색	

90mm×55mm[보존용지(1종)120g/m<sup>2</sup>]

(뒤 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li><li>2. 이 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li><li>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li></ol>
--

(앞 쪽)

제 호  <b>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b>	사 진 (2.5×3cm)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 바탕색: 연노랑색	

90mm×55mm[보존용지(1종)120g/m<sup>2</sup>]

(뒤 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li><li>2. 이 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li><li>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li></ol>
--

## 행정 기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    년도    반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시설기준에 따라 신고된 양곡가공업체의  
 년도    반기 업종별(제분업·제조업)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과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업종	구분	신고 업체수	연간가공능력(M/T)		연간가공실적(M/T)		비 고
			원료처리	제품생산	원료처리	제품생산	
총 계							
제 분 업	밀가루 제조						
	옥수수가루 제조						
	계						
제 조 업	옥수수전분당 제조						
	대두 식용유지 제조						
	계						

끝.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 g/m<sup>2</sup> 또는 일반용지 60 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09.10.1>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09.10.1>





## 양 곡 관 리 법

2012년 3월 일 인쇄  
2012년 3월 일 발행

발행처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 화 : 02 - 500 - 1974  
팩 스 : 02 - 507 - 2306  
<http://www.mifaff.go.kr>

인 쇄 : 거성커뮤니케이션  
전 화 : 031-421-6063  
팩 스 : 031-423-4425  
E-mail : won334@naver.com